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업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
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③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24-25호, 2024. 2. 14.>

이 고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① 반도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14nm 이하급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첨단 패키징 산업 :** FO-WLP, FO-PLP, FO-PoP, SiP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실리콘·화합물 기반의 전력반도체(Discrete, Power IC, Module 등), 이동수단용 반도체(MCU, ECU, Smart Sensor 등)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SW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② 이차전지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고용량 양극재 산업 :** 니켈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양극재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600mAh/g 이상 초고성능 전극(실리콘그라파이트 복합음극, 황 양극, 리튬금속 음극)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금속전지)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 배터리 광물의 제련·정련, 사용후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및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③ 디스플레이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 AMOLED 패널(3,000ppi 이상의 초소형, 500ppi 이상의 중소형, FHD 이상의 중대형,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 반치폭 40nm 이하이고 색재현율 REC2020 기준 90% 이상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3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초대형 칩크기 30㎛ 이하, 모바일 칩크기 20㎛ 이하, 초소형 칩크기 5㎛ 이하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4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 크기 1㎛ 이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5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여 투명 디스플레이, XR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④ 바이오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바이오의약품 산업** :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⑤ 로봇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 최고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소프트웨어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첨단 휴머노이드 연관 산업 :** 파지·조작(매니퓰레이터, 엔드이펙터 등), 이동(주행 플랫폼 등), 피지컬 AI(자율조작, 자율주행 AI 등) 기술과 관련된 로봇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IP·설계·디자인서비스·소프트웨어(로봇용 OS, 로봇 Application 등 포함)·시스템통합(System Intergration)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⑥ 방산

연번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고성능 유·무인 항공기용 1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 가스터빈엔진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산업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 )명 석·박사 (명) 학사이하 (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제품명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매출액 비율(B/A)		%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 】 (단위: 백만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비(C)	총 연구개발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력개발비(D)	총 인력개발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총계(E=C+D)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비율(E/A)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을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에 따라 첨단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